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2022. 02. 개정 (10판)

춘천원광효도의집은
질병관리본부 대응지침을 준수함



춘천원광효도의집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11. 1)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춘천원광효도의집 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 사항을 재정비하여 피해 최소화를 도모한다.

I. 기관 준수사항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노인요양시설 내 감염관리체계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의료재활 팀장

*증상 모니터링, 신고접수, 시설 내 위생물품 비치파악: **감염병 교육 및 수시 상황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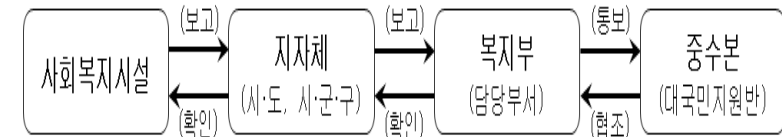
-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의료재활팀

*원내. 외 방역 및 소독, 소독물품 비치 및 관리: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참조하여 진행**

- 종사자, 입주민, 방문자(자원봉사자 포함) 명단 작성. 보관(주소, 연락처, 방문시간)

▶ 의심환자(의사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비상연락 체계 구축

<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대응 체계 >



◆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

▶ 시설 이용인,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 · 홍보

-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환경 위생 관리

- ▶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 손 세척제(액체비누, 알콜 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씻기 후에는 종이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소독강화
 -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일 3회 이상 자주, 매회 10분 이상)
- ▶ 마스크 착용, 체온계, 손 소독제 등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을 충분히 비치
 - 오미크론 감염 예방을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KF94·KF80 등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 함

새로운 생활 속 방역수칙 (방대본, '22.1.24)	
1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취약시설(3일 환경),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 등)에서는 반드시 보건용마스크 착용하기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4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가정 내 문고리, 스위치, 전화기)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6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만나지 말기

<상황별 권고 마스크(방대본, '22.1.24)>

상황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KF 94	KF 80		
의료 관련 상황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필수	-	-	-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우선) 권장		사용 가능	
생활 방역 상황	· 3일시설(밀집·밀접·밀폐) 또는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방문	(우선) 권장		사용 가능	
	· 타인 접촉이 잦은 직업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실외에서 2m(최소1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권장			

*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폐질환, 암, 뇌혈관질환, 면역저하, 비만, 천식

◆ 시설 입·출입 시 관리 강화

- ▶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씻기)후 출입 안내
 - 외부인 출입통제(출입자 명부작성)
- ▶ 시설 이용자·입소자·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서식 1)**
 - 시설내 이용인. 종사자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서식 1)
 - 시설 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 1)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 방문자는 출입 금지
 - 2)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유증상자 코로나19행동수칙 참조)
 - 3)입소자는 별도 공간에 격리 조치
- ▶ 다음과 같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 중단할 것
 - 1)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즉시 검사받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2)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해외입국자 관리 방안 및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름
 - 3)다음과 같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 중단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즉시 검사받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해외입국자 관리 방안 및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름

◆ 면회·외출·외박 및 프로그램 등 운영 관련

- ▶ (면회) 접촉면회 금지, 비접촉 면회 실시로 시설 내 감염 위험 최소화 도모
- ▶ (외출·외박) 필수 병원 진료 외 원칙적 외출·외박 금지
- ▶ (프로그램 등 운영)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 운영
- ▶ (이용시설 내 취식) 테이블 간 적정거리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

◆ 접촉의 최소화

- ▶ 시설 종사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 ▶ 출·퇴근 시간, 식사시간 교차 실시
- ▶ 좌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

◆ 의심·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

◇ (대응원칙) ①의심증상시 출근하지 않고 즉시 검사, ②신속한 접촉자 관리를 통해 추가전파 억제, ③상시 연락체계 유지

- 의심·확진자 발생 시 정부의 방역 대응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대응함
- 사자는 의심증상 발생 시, 출근하지 않고 시설 내 감염병 관리자와 상담 등 시설 내 전파 사전 차단 조치 고려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PCR 검사 수요 폭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 항원검사(RAT, rapid antigen test) 실시 검토 및 준비
- 환자발생 시 접촉자를 파악하고 시설 내 확진자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여 접촉자의 신속한 검사를 유도
-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

< 변경된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준(질병관리청) >

구 분		현 행	조정안 (2. 9. 시행)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 [①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격리기간	일반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재택치료자 동거인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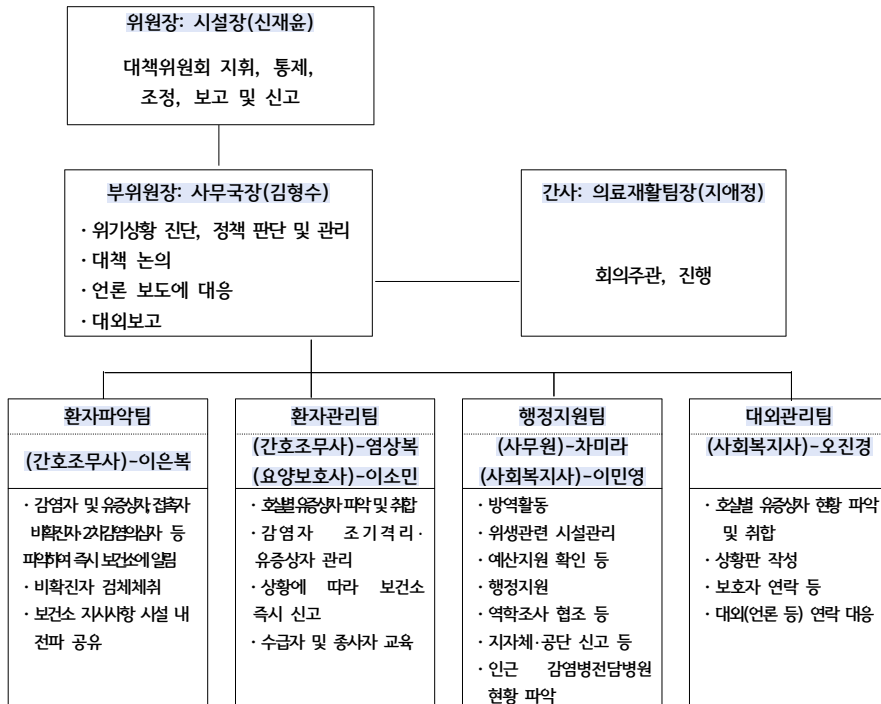
◆ 행정사항

-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업무배제 시 복무기준 관련
 - (유급휴가 처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하여 치료·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종사자가 코로나19 관련한 유급휴가로 대체 인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 시도의 파견인력 총괄부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에 대체인력 요청가능
-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백신휴가 실시 관련
 -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 실시 원칙
 - 각 지자체는 관내 시설별로 자체 예방접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안내 및 지원 실시
 - 지자체는 접종 기간 중 서비스 제공 이상 유무 모니터링 실시

Ⅱ. 비상 대응체계 정비

◆ 비상 대응체계 정비

(춘천원광효도요양병원) 감염병 관리·비상대응팀 편성표



<방역조치 및 선제검사 지침(안)>

○ 방역 조치

현행

- 접촉면회 잠정 중단(사전예약 비접촉방문면회는 유지)
- 백신 미접종자 접촉업무 배제
- 외부인 출입 금지 (시설유지관리 등 필수인력만 제한적 허용, 외부 강사 프로그램 제공 중단)
- 외래 진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소자 외출·외박 원칙적 금지
-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권고

○ 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현행

- 주 2회 PCR 검사 + 주 2회 신속항원검사

○ 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현행

- 미접종 입소자 주1회 PCR 검사
- (요양시설, 공생)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 입소시 PCR 검사(2회) 및 일정 기간 격리 후 입소
- * 1차 PCR 검사(1일차) → 격리 대기(2일차) → 2차 PCR 검사(3일차) → 2차 PCR 검사 결과 통보시까지 대기 후 입소(4일차)

<확진자 관리 지침(안)>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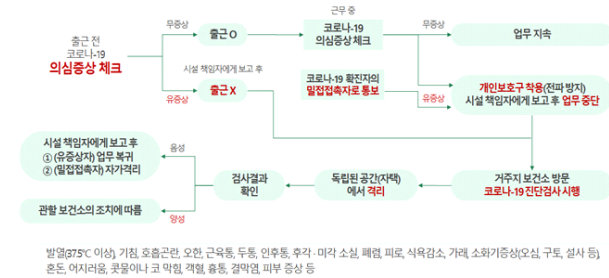
- 확진자 발생 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우선 이송, 확진자-비확진자 분리 등 동일집단 격리 관리 및 방역지원 제공
- * (방역지원) 산소발생기 임대비용 지원,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비용 지원

◆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시 대응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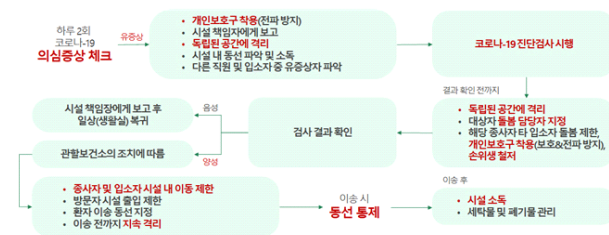
단계	구분	단계별 업무	업무분담
1단계 사정 확산 발생감지	환자발생 증상사정 격리조치	- 요양보호사: 환자 발생에 따른 상황전파 - 간호조무사: 유증상자 확인→즉시 보건소 의뢰·신고 - 중상확인, 감염병 발병 가능성 조사 즉시 격리 조치 - 관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상황보고	종사자전체 간호조무사 사무국장
	진료의뢰 및 확인 대책마련	- 병원진료 여부 결정하여 진료 의뢰: 보건소 협의 - 보호자연락→종사자→시설장 보고체계 확립 - 종사자 감염예방 주의 안내, 감염병 정보 수시 파악 - 위원회 가동, 상황판 설치, 보건소 신고라인 가동	시설장 간호팀장
1단계 진단 확산 발생확인	진단확인	감염병 의심환자는 확진 될 때까지 지속격리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 협력 조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보호자안내 보고 및 신고 확산방지	- 감염병 환자 접촉 대상자 관리 작성 - 장기요양기관 내 수급자(전체) 보호자 연락 현황 및 조치사항 등 안내 - 감염병 확진 시 초발 확진자 접촉 대상자 작성 보고 - 접촉 대상자 보건소 신고 및 대응방안 협의 - 감염자 접촉 장소 소독 관리, 종사자 예방교육 철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시설장 간호팀장
3단계 대처 확산 초기 및 유형	의심자 관리 환자관리 미감염 수급자 및 종사자 관리	- 환자: 의료기관 이송 치료(연락체계 구축) - 감염병 추가 의심자 지속 확인: 보건소 협조 -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환자현황 지속 파악 보고 - 유사환자 격리, 진료의뢰 및 보건교육 - 고위험군 해당 수급자 및 종사자 특별관리	사무국장 간호조무사 전체종사자 계약의 및 간호팀장
	접촉자 관리 추가발병자 파악 확산방지 언론대처	- 접촉자 조사 및 추적관찰 - 환자가 발생한 병실 및 주변 소독 실시 - 추가 발병자 조사 및 추적관찰, 현황지속 파악 보고 - 폭로시점부터 전염기 까지 접촉자 추적 파악 - 시설물 소독 및 방역, 단체활동 중지 감염확산 방지 교육 - 보건소 연계하여 일관된 자료 제공 및 언론대응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및 전 종사자
4단계 전파 차단 감염병 종식	감염병 관리 대책 위원회 운영 지속관리 감염병 발생 종료 선언	- 추가 의심자 및 종사자 지속 관리, 추가환자 동태 파악 - 유행감시: 발생현황 파악 통계 - 역학조사 협조: 관련기관 요청 시 - 최후 접촉자를 발생 질환별 최대 잠복기간까지 추적 관찰하여 새로운 발병자가 없으면 상황 종료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사무국장 시설장 간호팀장

의심환자 발생시 대응체계

□ 종사자 중 발생시 대응



□ 입소자 중 발생시 대응



◆ 의료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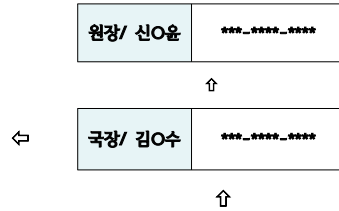
- ▶ 계약의사 : 김태일 계약의사
- ▶ 관할보건소: 남산면 보건지소, 춘천시 선별진료소
- ▶ 코로나19 검사 기관

검사기관	연락처	검사시간	기관 주소
선별진료소	033-250-4670 033-250-3882	평일 09:00 ~ 21:00 주말 09:00 ~ 18:00	춘천시 중앙로3 가 중앙로 135
강원대학교병원	033-258-2000	선별진료소 24시간, 안심진료소 09:00~17:00	춘천시 효자3동 백령로 156
한림성심대학병원	033-240-5815 033-240-5219	선별진료소 24시간, 안심진료소 08:30~ 16:30	춘천시 교동 석주로 77

<별첨>

코로나19 직원비상연락망

원불교(법인) 242-3095
경로복지과 249-2470
경찰서 112
소방서 119
강촌19센터 033) 262-2119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성명	전화번호
차오라	****-****-****	당직	033-262-4438	지오정	****-****-****
↓		↓		↓	
오오경	****-****-****	이오민	****-****-****	조오란	****-****-****
↓		↓		↓	
이오영	****-****-****	최오숙	****-****-****	김오란	****-****-****
↓		↓		↓	
한오진	****-****-****	김오하	****-****-****	김오순	****-****-****
↓		↓		↓	
허오창	****-****-****	오오남	****-****-****	김오순	****-****-****
↓		↓		↓	
박오근	****-****-****	정오진	****-****-****	박오순	****-****-****
↓		↓		↓	
전오숙	****-****-****	심오희	****-****-****	이오숙	****-****-****
↓		↓		↓	
박오필	****-****-****	유오옥	****-****-****	하오예	****-****-****
↓		↓		↓	
이오미	****-****-****	이오완	****-****-****	강오순	****-****-****
↓		↓		↓	
장오영	****-****-****	김오화	****-****-****	고오수	****-****-****
↓		↓		↓	
권오이	****-****-****	박오숙	****-****-****		

<서식> 입소자 & 종사자 임상증상 기록지

입소자(종사자) 모니터링 - 임상증상 기록지

대상자명	증상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오전															
	오후															
	호흡기증상															
	오전															
	오후															
	호흡기증상															
	오전															
	오후															
	호흡기증상															
	오전															
	오후															
	호흡기증상															
	오전															
	오후															
	호흡기증상															
	오전															
	오후															
	호흡기증상															
	오전															
	오후															
	호흡기증상															

* 호흡기증상: ①기침, ②인후통, ③호흡곤란, ④객담, ⑤기타

 **춘천원광효도의집**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자기 동선 기록지

 **춘천원광효도의집** 

<서식4>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자기 동선 기록지

- 확인일시: 2022년 월 일 (요일) 시
- 확 인 자: 소속 _____ 이름 _____ (서명)
- 시 설 명: 춘천원광효도의집

체크리스트		해당란에 ○ 표시		비고
		예		
협력체계(1)				
1. 비상연락체계 (격리시설-관할보건소 - 관할 시군구 및 사도)	1. 1. 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	○		
	1. 2.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		
준수사항(8)				
2. 1.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		직위:간호팀장 성명:지예정 연락처:010-3103-1513
2. 2. 자원봉사자방문자 등 외부인 시설 출입관리		○		
2. 3. 시설 입소자의 면화외출·외박 관리, 가족에게 안내 (※ 접촉면화 지침 확인할 것)		○		
2. 4.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 체크 매일 2회(발열체크 등) 실시 및 기록		○		
2. 5.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하고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2. 6.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 시작		○		
2. 7.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		
2. 8. 사회적(생활 속) 거리 두기와 접촉 최소화 적극 참여,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		○		
2. 9. 격리실이 구비되어 있는가? (이용시설 : 대기공간 / 생활시설 : 격리실)		○		
기타 특이사항				
(자유기술)				

<서식5>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모니터링 점검표

사회복지시설 명 : 춘천원광효도의집

감사 항목	내용 확인	적합성	부적합	증거 정보
1.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요양보호사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환자를 돌보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검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는 올바른 손 위생을 따르고 비누와 물 또는 알코올 포함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손 위생을 수행하며 점검 체계가 있습니다.	○		
	자가 격리된 요양보호사는 관리 기간 동안 입소자를 돌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가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출석 시간과 장소를 통제하고 입소자의 지역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요양보호사 명단 확보 및 보관 해야 합니다.	○		
2.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정	사회복지시설 출입 시간이 있으며, 출입 기간 동안에는 입소자를 봉사서비스를 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된 자원봉사자만 출입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방문 시간 (예 : 아침, 정오 및 저녁)을 설정합니다. 각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자원봉사자의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사회복지시설에 출입 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자원봉사자의 이름, 연락처 및 주소, 방문시간을 포함한 기록 하여 주십시오.	○		
3. 요양보호사의 건강 모니터링 및 관리	전담 직원은 요양보호사를 위해 매일 온도를 측정하고 검사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발열이나 호흡기 감염과 같은 증상을 모니터링하며 정기적 인 추적 및 조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요양보호사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		
4. 요양보호사 감염 관리 교육	손 위생, 기침예절, 개인 보호구 사용, 환경 및 소독 및 기타 관리 조치를 포함한 요양보호사의 교육 및 훈련을 합니다.	○		

* 입소자와 접촉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모두 포함

검사관 서명 : (서명) 검사 날짜 : 2022 년 월 일

<별첨2>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구 분		현 행	조정안 (2.9. 시행)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일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미완료자) 10일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격리통보		대상자 개별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 기간	일반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미완료자) 7일 격리	
	재택치료자 동거인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및 감시 해제	검사	(접종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격리해제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격라감시 해제 전 1회
		(미완료자) 격라해제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시점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7일차 24:00 (=8일차 0시)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 (12:00)	